「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2단 비교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收受)를 금지함 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 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한다. 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대통령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과 그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기관라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마.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따른 언론사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를 말한다. 가. 「국가공무원법」또는「지방공무원법」에따라고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나.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기관의장과 그 임직원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학교의장과 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학교의장과 교직원및학교법인의임직원라. 제1호라목에 따른 건론사의대표자와 그 임직원자를 당한다.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등의 사용권등 일체의 재산적이익	제2조(윤리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공직문화 형성을 위하여 소속공직자등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이하 "윤리강령"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학교법인 2. 법 제2조제1호마목에 따른「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2호에 따른언론사 ② 윤리강령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직위를 이용한 인사 관여,이권개입,알선,청탁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강의·강연·기고 등의 신고 및 제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공직자등의 청렴과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필요한 사항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윤리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윤리강령을 효과적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할수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 숙박 등의 편의 제공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4. "소속기관장"이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 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직자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의수수를 용인(容認)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공직자등이 위반행위 신고 등 이법에 따른 조치를 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지아니하도록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공직자등의 의무) ① 공직자등은 사적 이해 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공평무사하게 처신하고 직무관련자를 우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제5조(부정청탁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 1.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2.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3.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하는 행위 4.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5.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	제2장 부정청탁의 금지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6.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 는 행위 7.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 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8.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 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 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9.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 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 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10.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직하도록 하는 행위 11.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12.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13.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 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 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14. 사건의 수사·재판·심사·결정·조정·중재·화해 또 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 하도록 하는 행위 15.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 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 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 하지 아니한 사항을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 하다. 1. 「청원법」,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행 정절차법, 「국회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기 준(제2조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의 공공기관의 규정·사규·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정 하는 절차·방법에 따라 권리침해의 구제·해결을 요구하거나 그와 관련된 법령·기준의 제정·개 정·폐지를 제안·건의하는 등 특정한 행위를 요

구하는 행위

하는 행위

2. 공개적으로 공직자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

3.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법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령·기준의 제정·개정·폐지 또는 정책·사업·제도 및 그 운영 등의 개선에 관하여 제안·건의하는 행위 4. 공공기관에 직무를 법정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요구하거나 그 진행상황·조치결과 등에 대하여 확인·문의 등을 하는 행위 5. 직무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6. 질의 또는 상담형식을 통하여 직무에 관한 법령·제도·절차 등에 대하여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7. 그 밖에 사회상규(社會常規)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제6조(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②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경위·취지·내용·증거자료 등을 조사하여 신고내용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된 경우 또는 제2항 및 제3항의 부정청탁에 관한 신고·확인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다음 각호의 조치를할수있다. 1. 직무 참여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의 지정 3. 전보 4.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제3조(부정청탁의 신고 방법 등) 공직자등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속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연락처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2. 부정청탁을 한 자의 인적사항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부정청탁을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부정청탁의 일시, 장소 및 내용 5. 부정청탁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⑤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공직자등에게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0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담당관 또	제4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있다.

1. 제3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

는 데 필요한 사항

료 등의 확보 여부

는 다른 공직자등으로 하여금 그 공직자등의

~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점검

1.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을 대체하기 지극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어려운 경우

- 2.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경우
-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 ⑥ 공직자등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감독기관·감 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다른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해당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부정청탁의 신고·확인·처리 및 기록·관리·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 지 여부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 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 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 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 제5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 신고의 처리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 2.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 에 통보
- 3.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 제6조(소속기관장의 조사결과의 통보) ① 소속기 관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 우에는 조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의 결과를 신고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 소속기관장이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
- 제7조(소속기관장의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한 조치)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4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의 조치를 통해서도 그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7조제4항제3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법 제7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 1.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 2. 사무분장의 변경
- 제8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감독 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9조(감독기관 등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조치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이하 "조사등"이라 한다)를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 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 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 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수사기관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 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 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제10조(감독기관 등의 조사 등 결과의 통보 방법 등)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 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11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 및 확인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②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는 부정청탁의 신고에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1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부정청탁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완되나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한다.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원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감독기관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 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 야 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접수 받은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 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 는 수사기관에 송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다한 경우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
	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4 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을 첨부하여 이첩하 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사실을 신고자에 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하고,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③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부정청탁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3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
	회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14조(종결처리 등)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제5조, 제9조, 제12조 및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수받은 신고 또는 이첩·송부받은 신고를 종결할수 있다. 이 경우 종결 사실과 그 사유를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 2. 신고자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완요구를 받
	고도 보완 기한 내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3. 신고에 대한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사항에 대 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4. 신고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 용에 해당하고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5. 동일한 내용의 신고가 접수되어 먼저 접수된 신고에 관하여 조사등 중에 있거나 이미 끝난 경우로서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
	6. 그 밖에 법 위반행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조 사등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종결하 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자는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다 시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5조(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의 공개) ① 소속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고려하여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2. 법 제6조를 위반하여 유죄판결 또는 기소유 예처분이 확정된 경우
	3. 그 밖에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 예방을 위하 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에 다음 각 호의 내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1. 부정청탁의 일시·목적·유형 및 세부내용 2. 법 제7조제4항 각 호, 제16조 및 제21조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조치 및 징계처분 3.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제재내용
	제16조(위반행위의 기록·관리) ① 소속기관장은 법 제7조제8항에 따라 소속공직자등과 관련하여 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제7조 및 제13조 제1항에 따른 신고 내용, 확인 사항 및 처리내역 등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의 보존기간에 관하여는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를 준용한다. ② 소속기관장은 제1항의 기록을 전자매체 또는
	교육기관정은 제18의 기독을 전자에게 모든 마이크로필름 등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제3장 금품등의 수수 금지 등

청탁금지법

-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 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 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 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 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1.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등이나 파견 공직자등 에게 지급하거나 상급 공직자등이 위로 격려 포 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 품등
-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 4. 공직자등의 친족(「민법」제777조에 따른 친족 을 말한다)이 제공하는 금품등
- 5. 공직자등과 관련된 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 회·향우회·친목회·종교단체·사회단체 등이 정하 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및 그 소속 구성원 등 공직자등과 특별히 장기 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고 있는 자가 질병· 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
- 6.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 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
- 7.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 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
- 8. 그 밖에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 라 허용되는 금품등
- ④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 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받 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등(이하 "수수 금지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의 배 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① 공직 | 제18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방법 등) 공직자 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17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란 별표 1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등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

청탁금지법

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1. 공직자등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 2. 공직자등이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안 경우
- ②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또는 자신의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이나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받은 금품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인도하거나 인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 2. 해당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3. 그 밖에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 ③ 소속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 2항 단서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반 환 또는 인도하게 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 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 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 또는 그 배우자 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품등의 신고, 금품등의 반환·인도 또는 수사기관에 대한 통보의 과정에서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직자등에게 제7조제4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5항의 조치를할 수 있다.
- ⑥ 공직자등은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나 인도를 감독기관·감사원·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도 할 수 있다.
- ⑦ 소속기관장은 공직자등으로부터 제1항제2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반환을 거부하는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로 하여금 그 금품등을 제공자에게 반환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시행령

- 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자의 인적사항
- 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소속부서 및 연 락처
- 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2.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 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의 인적사항
- 가.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 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
- 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 사항, 법인·단 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 4. 금품등의 종류 및 가액
- 5. 금품등의 반환 여부
- 6.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증거자 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 제19조(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 조를 준용한다.
- ② 소속기관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 의 조사 결과에 대한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 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소속 공직자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 의 신고내용과 확인사항 및 처리내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 관리 및 보존에 관 하여는 제16조를 준용한다.
- 제20조(감독기관 등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 ②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법 제9조제6항 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 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를 준용한다. ③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제9조를 준용한다.
	④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등 결과의 신고자에 대한 통보기간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제21조(국민권익위원회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직자등이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수수 금지 금품등을 신고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면의 기재 사항에 관하여는 제18조를 준용한다.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수수 금 지 금품등을 신고 받은 경우 신고에 관한 확인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의 이첩 또는 송부 방법 및 이첩 또 는 송부의 처리 결과에 대한 통보에 관하여는 제12 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이첩·송부의 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이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 되는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 우 이첩 또는 송부에 관한 조치 및 통보 방법에 관 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제23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제24조(인도받은 금품등의 처리) ①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법제9조제2항 단서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즉시 사진으로 촬영하거나영상으로 녹화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받은 국민권 익위원회는 제21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하는 경우에는 인도받은 금품등과 제1항 에 따라 촬영하거나 영상으로 녹화한 기록물을 첨 부하여 이첩 또는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첩 또는 송부한 사실을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2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또는 이 조 제2항에 따라 금품등을 인도, 이첩 또는 송부받은 소속기고나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조사등을 한 결과, 인도·이첩 또는 송부받은 금품등이 수수 금지 금품등이 아닌 경우에는 다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금품등을 인도한 자에게 반환한다.
	④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 권익위원회는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 으로 인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 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 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 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제25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별표 2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 ② 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공직자등은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외부 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 고하여야 한다.
- ④ 소속기관장은 제2항에 따라 공직자등이 신고 한 외부강의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등을 제 한할 수 있다.
-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26조(외부강의등의 신고) ① 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외부강의등 (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공직 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속기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신고자의 성명, 소속, 직급 및 연락처
- 2. 외부강의등의 유형, 일시, 강의시간 및 장소
- 3. 외부강의등의 주제
- 4. 사례금 총액 및 상세 명세(사례금을 받는 경 우만 해당한다)
- 5. 외부강의등의 요청자(요청기관), 요청사유, 담당 자 및 연락처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상세명세 또는 사 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 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 제27조(초과사례금 신고방법 등) ① 공직자등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이하 "초과사례금"이라 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받은 사실을 안 날부터 2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
 - 2. 초과사례금의 액수 및 초과사례금의 반환 여부
-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초과 사례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 대하여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할 초과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해당 공직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공직자등은 지체 없이 초과사례금(신고자가 초과사례금의 일부를 반환한 경우에는 그 차액으로 한정한다)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8조(반환·인도 비용의 청구) 공직자등은 자신이나 자신의 배우자가 법 제9조제2항 또는 제6항에 따라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법제10조제5항에 따라 초과사례금을 반환한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반환하는데 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 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② 제1항에 따라 공무수행사인에 대하여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는 경우 "공직자등"은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고, "소속기관장"은 "다음각호의 구분에 따른 자"로 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그 위원회가 설치된 공공기관의 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감독기관 또는 권한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공공기관의 장 3. 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 파견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 4. 제1항제4호에 따른 개인 또는 법인·단체: 해당 공무를 제공받는 공공기관의 장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제12조(공직자등의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1. 부정청탁의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제한등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홍보계획의 수립및 시행 2. 부정청탁 등에 관한 유형, 판단기준 및 그 예방 조치 등에 관한 기준의 작성 및 보급 3. 부정청탁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상담·접수·처리 등 4.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제4장 부정청탁 등 방지에 관한 업무의 총괄 등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관리·분석 등	
제13조(위반행위의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또는 그 감독기관 2.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3. 국민권익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보호 및 보상을 받지 못한다. 1. 신고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신고한 경우 2. 신고와 관련하여 금품등이나 근무관계상의 특혜를 요구한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취지·이유·내용을 적고 서명한 문서와 함께 신고대상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한다.	제29조(법 위반행위의 신고) 누구든지 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법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공공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인적사항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및 연락처나. 그 밖에 신고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 간. 개인인 경우: 성명, 연락처, 직업 등 법 위반행위자를 확인할 수 있는 인적사항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인 경우: 가목의사항및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소재지다.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밖의 종업원인 경우: 가목의사항,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명칭·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신고의 경위 및 이유 4.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가 발생한 일시, 장소 및 내용 5. 법 위반행위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 (증거자료를 확보한 경우만 해당한다)
	제30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조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있다. 1. 제29조 각 호의 사항 등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 2. 신고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증거자료 등의 확보 여부 3.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를 하였는지 여부 4. 신고자가 신고처리과정에서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는 것(이하 "신분공개"라 한다)에 동의하는지 여부 ② 조사기관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에는 신고의 처리 절차 및 신분공개 절차에 관하여 신고자에 제 설명하였다. 함인

게 설명하여야 한다.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③ 조사기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가 이 조 제1항제1호에 따른 신고 내용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적정한 기간을 정하여 신고자로 하여금 그 사항을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제31조(조사기관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치 등) 조사기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 통보 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제6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32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에 대한 확인)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신고에 관한 확인 사항, 신고자에 대한 설명 및 신고 내용의 보완에 관하여는 제30조를 준용한다.
제14조(신고의 처리) ① 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 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 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

- 세14소(신고의 저리) ① 세13소세1앙세1호 또는 제2호의 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은 같 은 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 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 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 는 수사를 하여야 한다.
- ② 국민권익위원회가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신고자를 상 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조사기관에 이첩하고, 그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조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받은 경우만 해당한다)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공소 제기, 과태료 부과대상 위반행위의 통보, 징계 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조사기관으로 부터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에게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 ⑤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 사 결과를 통보받은 신고자는 조사기관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국민권익 위원회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조사기관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 ⑦ 제6항에 따른 재조사를 요구받은 조사기관은 재조사를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통보를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재조사 결과의 요지를 알려야 한다.

- 제33조(국민권익위원회의 법 위반행위의 신고의처리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를 받은 날(신고 내용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0조제3항에따라 보완된 날을 말한다)부터 60일 이내에 제30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이첩하여야 한다.
- 1.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 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
- 2.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감사원
- 3.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경우: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
-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내용이 여러 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중에서 주관 기관을 지정하여 이첩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기관은 상호 협 조를 통하여 신고사항이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 야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신고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송부할수 있다.
- 1. 제1항에 따른 이첩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 니한 경우
-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종결처리의 대상인지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첩하거나 송부하는 경우에는 제30조제1항 각 호의 확인 사항(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제외한다)을 첨부하여 이첩하거나 송부하고, 이첩 또는 송부 사실을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한다.
-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34조제2항에 따라 조사기 관으로부터 조사등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지체 없이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한 신고자에게 조사등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정탁금지법	정탁금지법 시행령 제34조(조사기관의 이첩·송부의 처리) ① 조사기 관은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신고의 내용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등 결과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소속기관장의 조치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경우: 과태료 관할 법원에 통보다. 징계 대상인 경우: 징계절차의 진행
	2. 감독기관 또는 감사원의 조치 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3. 수사기관의 조치가. 범죄의 혐의가 있거나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사절차의 진행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거나 징계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소속기관에 통보 2 조사기관은 법 위반행위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 조사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조사등의 결과를 신고자(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여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신고를 이첩 또는 송부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및 국민권익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한다. 3 조사기관이 제2항에 따라 통보하는 조사등 결과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신고사항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2. 신고사항과 관련하여 신고자 및 국민권익위원회가 알아야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35조(종결처리 등)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 원, 수사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를 종 결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 한다. 제36조(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결과에 대한 이 의신청) ① 신고자는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또 는 제4항에 따라 조사등에 대한 결과를 통보받 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의 경위와 이유 를 적은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서 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②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조사 기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 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의 통지와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재조사 결과의 통지에 대해서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제37조(수사 개시·종료의 통보) 수사기관은 법 위 반행위에 따른 신고 등에 따라 범죄 혐의가 있 다고 인식하여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해당 공직자등 이 소속한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8조(신분보호 조치 등) 조사기관은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경우 조 사등의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아 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공공기관 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를 위 하여 청렴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부정청탁의 공개에 관 한 사항
	2. 법 제7조, 제9조 및 제14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의 처리 및 조치 등에 관한 사항
	3. 제4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법 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신고자등의 보호·보상)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 등(이하 "신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	제40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추천 등) ① 조사기관 은 법 위반행위 신고자 중에서 법 제15조제5항 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있

- 나 신고등을 한 자(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 에게 이를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
- 1. 제7조제2항 및 제6항에 따른 신고
- 2.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 및 제6항에 따른 신 고 및 인도
- 3.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
-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를 한 자 외에 협조를 한 자가 신고에 관한 조사·감사 ・수사・소송 또는 보호조치에 관한 조사・소 송 등에서 진술・증언 및 자료제공 등의 방법 으로 조력하는 행위
- ② 누구든지 신고자등에게 신고등을 이유로 불이

- 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대상자를 추천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추천을 하는 조사기관은 국민권 익위원회가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도 록 관련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포상금 지급을 위하여 조사기관, 이해관계 자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포상금 지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다.
-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 외에도 필요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 자를 선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으로 인하여 자신이 한 이 법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신고자등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공익신고자보호법」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16조부터 제25조까지의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공익신고자등"은 "신고자등"으로, "공익신고등"은 "신고등"으로본다. ⑤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인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다. ⑥ 국민권익위원회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신고로인하여 공공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그 신고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⑦ 제5항과 제6항에 따른 포상금・보상금 신청및지급 등에 관하여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68조부터 제7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부패행위의 신고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한 자"로, "이 법에 따른 신고"는 "제13조제1항에 따라 신고"로 본다.	제41조(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국민권익위원 회는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을 위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법 제12조에 따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에 입력을 하도록 요 청할 수 있다.
제16조(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자등이 직무수행 중에 또는 직무수행 후에 제5조, 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해당 직무를 중지하거 나 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부당이득의 환수) 공공기관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8조를 위반하여 수행한 공직자등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의 상대방에게 이미 지출·교부된 금액 또는 물건이나 그 밖에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한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7조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한 업무 2.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제19조(교육과 홍보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직 자등에게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받아야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이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국민들이 이 법을 준수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및 홍보 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2조(교육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매년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법령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는 서약서를 매년받아야 한다. ④ 국민권익위원회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강사 양성, 표준교재 및 강의안 개발·보급, 청렴연수원 집합교육 운영 등 지원 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20조(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의 지정)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등 중에서 다음 각 호의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 당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1.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의 교육・상담 2. 이 법에 따른 신고・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 용의 조사 3.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5장 징계 및 벌칙
제21조(징계) 공공기관의 장 등은 공직자등이 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3조(징계기준)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에 따른 징계를 위하여 위반행위의 유형,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청탁금지법 시행령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2. 제15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신고자보호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같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료 제출, 출석,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	
②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로 부과를 취소한다.	
③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3자를 통하여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제1항제1호 및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형법」등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과태료를 부과한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그 과태료를 부과한를 취소한다.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 태료를 부과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규정이나「형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제9 조제1항 · 제2항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공직자등은 제외한다.	
2. 자신의 배우자가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한 사실을 알고도 제9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 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다만, 공직자 등 또는 배우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하거나 거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등 다른 법률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이 있은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가 부과된 후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 의결을 하지 아니한다.	
⑦ 소속기관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그 위반 사실을 「비송 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양벌규정)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제1항제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또는 제23조제5항제 3호[금품등의 제공자가 공직자등(제11조에 따라 제8조가 준용되는 공무수행사인을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 또는 과태료를 과한다. 다만,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고유식별정보 등의 처리)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및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부정청탁 및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에 따른 외부강의등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법 위반행위의
	신고.처리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5조에 따른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에 관한 사무 5. 법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환수에 관한 사무
	제45조(규제의 재검토)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한다.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1. 제17조 및 별표 1에 따른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의 가액 범위 2. 제25조 및 별표 2에 따른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부 칙 <제13278호, 2015.3.2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6. 9. 28.부터 시행한다.
제2조(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같은 항 각 호의 행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은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 강의등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의 가액 범위(제17조 관련)
	구분 범위
	1.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 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3만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2.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신하는 화환· 10만원 조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3. 선물 : 금전 및 제1호에 따른 음 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 또는 5만원 유가증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비고 가.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각각의 가액 범위는 각 호의 구분 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나. 제1호의 음식물과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5만원으로 하되, 제1호 또는 제 3호의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다. 제1호의 음식물과 제2호의 경조사비를 함께 수수한 경우 및 제2호의 경조사비와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각각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라. 제1호의 음식물, 제2호의 경조사비 및 제3호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합산한다. 이 경우 가액 범위는 10만원으로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5 1 2 12	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액 범위를 각각 초과해서는 안된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 (제25조 관련)
	1. 공직자등별 사례금 상한액 가.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당신입 차관급 4입 5입 이상 이상 이하 상한액 50만원 40만원 30만원 20만원
	나.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다. 법 제2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 등(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 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다): 100만원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 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 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 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른다.
	 2. 적용기준
	가. 제1호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임용령」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른다. 다만, 임용관련법령에서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급구분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적용되는「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부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단련법령 또는「공무원 여비 규정」등 여비관련법령의 직급 구분에 따른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제1호가목 표에 따른 직 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 서는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임 용관련법령, 보수관련법령 및 여비관련법령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다.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은 강의 등 의 경우 1시간당,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 으로 한다.
	라.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은 1시 간을 초과하여 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도 사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
	례금 총액은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1시간 상 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 과하지 못한다.
	마.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상한액에는 강의 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없이 외부 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 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 을 포함한다.
	바. 마목에도 불구하고 공직자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여비를 지급받지 못 한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등 공공기 관별로 적용되는 여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제1호의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는다.